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연월일	2020. 11. .

의 결
사 항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발의연월일	2020. 11. .
발 의 자	윤종호 의원 외 8명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0. 11. .

발 의 자 : 윤종호·강승수·권재욱
김낙관·김영길·김재우
김춘남·안장환·이지연
의원(9명)

1. 제안이유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는 구미와 대구, 두 지역 간의 문제가 아니라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삼고 있는 경상도민 전체의 문제이며, 낙동강 전체의 수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함. 하지만 대구는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낙동강 수질 개선은 안중에도 없는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음. 이에 구미시의회 차원에서 취수원 이전의 문제점과 낙동강 수질개선 방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취수원 이전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성인원 : 7명(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5)

나. 활동기간 : 2020. . ~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다. 활동사항

- 대구 취수원 이전 반대에 관한 사항
- 낙동강 수질개선 및 구미·대구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 취수원 이전관련 사례 수집·분석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한 정책 대안 제시 등

3.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나.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